사전자산배분기준

KeyWest Global Investments

사전자산배분기준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(이하 "관련법규"라 한다)에 따라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.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.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범위) ① 이 기준은 회사 내 운용담당자 등 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 - ②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.)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를 포함하여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한다.
 - ③ 이 기준은 법 제 80 조 제 1 항의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호
 -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.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 또 한,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절차없이 관련법 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. 다만,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전거래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
 - 1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
 - 2. 장내파생상품의 매매
 - 3.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
 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・할인・매매・중개・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
 - 가. 은행
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마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
 - 바. 증권금융회사
 - 사. 종합금융회사
 - 아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 - 5.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
 - 6.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
 - 7.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

- 8.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④ 이 기준은 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

경우에도 준용한다. 다만, 이 경우 제 11 조부터 제 13 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**제 3 조(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)**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.
- **제 4 조(용어정의)**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1. "사전자산배분"이라 함은 법 제 80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 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운용담당자"라 함은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 - 3. "매매담당자"라 함은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.처분의 실 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 - 4. "정보통신수단"이라 함은 전화, 전자우편,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.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.
 - 5. "당일 발행자산"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 이 결정되는 채무증권,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.
 - 6. "종목코드주문"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.
 - 7. "텍스트주문"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.
- **제 5 조(자산배분 원칙)** ①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②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펀드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, 처분한 자산은 매매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격주문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접수시간 순서대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펀드에 배분하여야 한다.
 - ③ 다수의 펀드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, 처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
 - ④ 실제 취득, 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미리 정한 펀드별 주문수량을 기초로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펀드 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

- 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.
- 1. 법규 및 규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
- 2.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법규 및 규약 비율을 맞추기 위한 주문의 경우
- 3.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 주문의 경우
-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.
- ⑥ 운용담당자가 제 5 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- 제 6 조(자산배분시스템)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, 주문금액, 가격,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,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 - ③ 회사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.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회사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.
- 제 7 조(주문서의 작성) ①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,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.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 건별로 종목코드주문, 텍스트주문,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다.
 -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.
- 제 8 조(사전자산배분의 정정) ① 회사는 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,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·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·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.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 9 조(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)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 시장의 특성,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 거래를 할지 여 부를 설정일,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,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.
 - ③ 회사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배분하되,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, 우선적 또는 추가적인 배분을 할 수 있다.
 - 1. 법규 및 규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
 - 2. 배분 대상 펀드가 MMF 및 채권형(단기어음펀드 포함) 펀드의 경우
 - 3. 배분 대상 펀드가 해지 예정인 펀드 및 설정 1개월 이내의 펀드(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에는 6개월)의 경우
 -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동성이 10 억 이하의 펀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한 안분 배분 순위에 있어 최후 순위로 안분할수 있으며, 이 경우 유동성이 큰 펀드 순위로 안분할 수 있다.
 - ⑤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운용담당자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또는 최후 순위로 배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용담당자는 해당 근거자료를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- 제 10 조(당일 발행자산의 특례)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, 운용담당자는 제 12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 -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.
- 제 11 조(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) ① 규칙 제 10 조제 4 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운용 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사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

- 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 득·처분 등을 하는 경우
- 2.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
- 3.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
- 4.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
- **제 12 조(운용담당자의 업무)**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이하 "투자중개업자 등"이라 한다)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(명칭, 가격, 수량, 시장동향 등)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.
 -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
 - 2.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
 - 3.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·가격을 협의(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
- **제 13 조(매매담당자의 업무)**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.
 -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**제 14 조(준법감시부서의 감시)**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